

검 토 보 고 서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안안 --- 1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0. 9. 15)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은 민원여권과의 가족관계 사무지원 운영에 따른 시보조금 1억 4,372만 2천원과 전산정보과의 U- 시범도시지정 및 지원사업을 포함한 18건의 간주 처리액 10억 8,840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011억 2,951만 1천원보다 6억 4,855만 8천원이 증액된 1,017억 7,80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내용>

○ 총무과에서는 창호시설이 없거나 환기시설이 부족한 청사내의 자동차등록 민원실외 1개소에 대하여 창호를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관용차의 이용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직원의 업무택시 이용료 9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보조금인 공공기관 인터넷 운영비 3,140만 1800원과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비 93만 7,760원의 집행잔액을 반환함에 따라 증액편성 되었음.

○ 자치행정과에서는 민방위 가로기 구매에 따른 211만 8천원 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5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국고보조금 중 민방위교육훈련비 11만 1,688만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비 38만 9,900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4만 8,280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비 97만 5,540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80만원 이 반환금 등 5건에 232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 보조금 중 민방위교육훈련지원 13만 534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 1억 1,384만 5,960원,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비 24만 8,900원, 승용차 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 50만 650원,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3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 52만 2,650원,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 1,372만 2천원 등 7건에 1억 2,900만 4천원이 반환금으로 증액편성 되었음

○ 문화체육과에서는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에 대하여 추가금으로 50%를 시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나머지 50%인 4천만원과 민간행사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미술 프로젝트 3,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피아골외 고전영화필름복제 198만 5천원,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 작성비 40만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196만 5천원,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정비 2008년도 미반납분 247만 3천원,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정비 5,082만 3천원 등 총 5건에 5,764만 6천원이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고전영화필름복제 198만 5천원,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 작성비 40만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98만 3천원, 망원정보수정비, 소화전설치비 1,859만 1천원, 민간문화시설(공연장 등)화장실개선 1억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 7,996만 3천원, 양화나루 잠두봉유적정비 2008년도 미반납분 106만 1천원,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정비 2,178만 1천원 등 총 8건에 2억 2,476만 4천원이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편성되었음

○ 전산정보과에서는 정보인프라확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임대비 25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비 9만 6천원과 U -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비 5,941만 4천원이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편성 되었음

○ 2010년도 제2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 증액분 6억 4,855만 8천원 중 시비 4,000만원, 구비 1억 296만 7천원은 순수 증액된 부분이며 나머지 5억 559만 1천원은 국. 시보조금 및 인센티브 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반환된 금액으로 전체 증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국시비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의 적정성, 목적의 타당성, 비용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획 수립과 신중한 집행으로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